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869
----------	------

제안년월일: 2020년 9월 4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광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508)과 김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706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에너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다양한 에너지사업 환경변화에 서울에너지공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집단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가의 옥내 노후배관 교체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환경·에너지 분야 사업추진 시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열거된 조문을 새로운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맞춰 용어를 변경함.
- 나. 태양광, 수소 등 에너지 간 융·복합 등의 신사업 분야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공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이 인정 사업 항목을 신설함.
- 다. 노후 사용가 시설 교체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
 4.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관련 사업
 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
 7.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
 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업의 부대사업(교육홍보, 연구개발, 국내외 협력,

부동산 거래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

10.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11. 집단에너지 노후 사용시설 교체지원 사업
1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p> <p>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p> <p>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p> <p>4.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p> <p>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관련 사업</p> <p>6.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p> <p>7. 제1호부터 제6호 관련 조사, 연구, 개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p> <p>8. 제1호부터 제7호 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도</p>	<p>제20조(사업) ① ----- ----- -----.</p> <p>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p> <p>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p> <p>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p> <p>4.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p> <p>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관련 사업</p> <p>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p> <p>7.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p> <p>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p>

현행	개정안
<p>9. 제1호부터 제8호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p> <p>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p> <p>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p>	<p>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업의 부대사업(교육홍보, 연구개발, 국내외 협력, 부동산 거래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p> <p>10.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p> <p>11. 집단에너지 노후 사용시설 교체 지원 사업</p> <p>1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p> <p>1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